

경찰의 부패실태와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e officer's current level of corruption and analysis of the cause of it

김 상 운(Kim, Sang-Woon)*

ABSTRACT

Korea national police underwent trial and error in the past, and now they are not free from suspicions of corruption. Although the corruption of police decreased compared to that of 1980's, the news reports of corruption cases often cause consternation among Korean citizens.

There are varied opinions about the cause of corruption. As for individual reasons, shortage of money to support their family, lack of professional ethics and quality are mentioned. As for systematic reasons, corruption of police is considered as a matter of course in police force and some associates in police are sympathized with the corrupted members.

Especially in Korea police, not only individual factors but also systematic factors are prevalent for reasons of corruption.

These opinions are proven by 2010 report of Korea Police Corruption Cases and other formal data. Based on these materials, I studied about formal reasons of police corruption and its connection with external influences. Using the result of my study, I suggested corruption-prevention and anti-corruption methods that is suitable for Korea Police in the present situation.

Key words: Police corruption, Police punishment, Types of corruption, Police ethics, Corruption prevention method

1. 서 론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적 문화로 인해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소위 '정(情)'이라는 고유의 문화로 인해 외국인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情)'의 문화가 항상 좋은 영향만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에게 '정(情)'의 문화는 매우 곤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패와 관련된 문제이다. 전 세계 역사책에서는 이전에 국가가 망한 이유 중에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부패의 문제였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E-mail : podori48@cu.ac.kr

따라서, 한 국가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주는 부패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최악 중에 하나로 인식할 수 있다. 특히, 경찰의 경우 경찰의 부패가 일반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일반공무원과는 큰 차이가 난다.

그 이유로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법을 어기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곧 법과 권위를 스스로 깨뜨리는 행위가 되고 수 년 동안 쌓아 온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 경찰부패는 시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인 것이다. 부패한 경찰이 언론에 오르내릴 때 어려운 여건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경찰관이나 전체 경찰조직에 큰 타격을 주게 마련이다(이황우·김진혁·임창호, 2007: 441).

최근 경찰수뇌부가 연관된 ‘함바비리’, ‘이경백사건’ 등으로 인해 경찰조직에 대한 대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졌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구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경찰의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의 부패문제를 이제는 과거 ‘정(情)’의 문화로 치부하며 우리들만의 작은 문제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 분명해졌다. 특히, 경찰의 경우 광복이후 정치적 시너를 비롯한 부패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인식되어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부패에 대한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가 실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2010년도 경찰청 징계대상자들의 징계사유와 내용을 활용하여 SPSS 19.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경찰부패의 의의

1) 경찰부패의 정의

공무원 부패의 부패현상이 특정 국가사회의 정치제도, 국민의 가치관 내지는 도덕성 그리고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부패의 개념에 대한 연구자자들의 견해는 매우 다양하며, 통일적인 개념정의를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J. Scott, 1972: 신현기·김택, 2004: 214).

이러한 부패의 어원은 썩을 ‘부(腐)’ 무너질 ‘패(敗)’라는 한자어를 연결하여 ‘썩어 무너지다’라는 의미에서 왔으며, 영어의 어원은 라틴어 cor(함께)와 rupt(파멸하다)의 합성어로서 ‘함께 파멸하다’라는 의미에서 왔다(이황우·남형수, 2008: 75).

부패에 대한 초기의 학자별 입장을 살펴보면, David H. Bayley(1966)은 부패에 대

해서 “뇌물 수수해위와 관련해서 이익에 치중한 나머지 공권력을 오용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신현기·김택, 2004: 214-215).

Richard H. Ward(1975)는 “대가성에 상관없이 경찰이 그 권한을 불순한 의도로 사용한 모든 경우”라고 하여 보다 넓은 관점에서 부패를 정의하였다(이황우·남형수, 2008: 75-76).

국내 학자들은 부패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표창원(2001)은 경찰부패에 대해서 “경찰관이 그 지위와 권한을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또는 편파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와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는 행위 및 이의 원인이 되거나 이에 조력하는 경찰관이 아닌 자의 행위”라고 정의하였다(표창원, 2001: 329).

문성호(2002)는 경찰부패에 대해서 경찰부패를 뇌물이라고 하는 것과 결부된 경찰의 일탈행위라고 광의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이황우·남형수, 2008: 76).

이황우·남형수(2008)는 “경찰관이 그 지위와 권한을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또는 편파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와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는 행위 및 이의 원인이 되거나 조력하는 경찰관 아닌 자의 행위”라고 정의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이황우·남형수, 2008: 7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패행위”를 ①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③①,②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특히, 경찰부패의 경우 다른 공무원 직종과 다르게 경찰만의 특수한 상황 및 권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학자별로 경찰부패에 대해서 정의하는 바가 각자 다르다. 일반적으로 부패라는 것은 경찰의 권력을 바탕으로 부당한 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거나,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부패에 대한 정의를 논함에 있어서 광의의 부패개념과 협의의 부패개념으로 서로 엇갈리기도 한다. 광의의 의미로서 부패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부패라는 것이 경찰공무원 자신만의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협의의 경찰부패 개념은 경찰관이 일반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가 있어야 부패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선물’을 받은 경우에라도 단순한 호의 내지 ‘친선(friendship)’이 동기일 경우엔 부패에 해당하는 ‘뇌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형법」에서는 ‘뇌물죄’에 대하여 부패의 개념을 협의에 의한 부패개념으로 인식하여, ‘호의’와 ‘대가성’에 대한 내용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경찰이미지 제고 및 일반경찰관의 ‘위하효과’를 위하여 ‘경찰공무원행동강령’ 등을 통해 내

부적으로 광의의 개념으로 부패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

<표 1> 학자별 경찰부패의 정의

학자	연도	정 의
David H. Bayley	1966	뇌물 수수해위와 관련해서 이익에 치중한 나머지 공권력을 오용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개념
Samuel P. Huntington	1968	정치적·사회적 제도화의 결함의 표명
Richard H. Ward	1975	대가성에 상관없이 경찰이 그 권한을 불순한 의도로 사용한 모든 경우
Golden Misner	1975	경찰관이 선물 등을 받음에 있어 그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그것은 '뇌물'이지만 '단순한 호의 내지는 친선 (friendship)'이 동기일 경우엔 '뇌물'로 보선 안 된다
Charles Bahn	1975	'피의자를 엮어 넣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illegal planting of evidence)'등의 잘못된 행위들도, 부정부패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함
Daniel H. Lowenstein	1987	부패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자하는 자의적 의향이 있어야 하며, 공무원에게 이익이라는 가치가 생겨야 하고, 공무원의 행위와 가치 있는 사물 간에는 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관계에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향을 주고 또는 받는 의향이 포함되어 있어야 만이 부패라고 할 수 있다.
Gerald Lynch	1989	동료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모른척하는 경찰관의 행위도 그로 인해 이득을 얻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직업윤리와 도덕적 의무를 팔아 동료의 환심을 샀기 때문에, 역시 부정부패로 봄
김택	1998	부정부패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권한의 남용이 의도적이어야 하며 특정인에 귀속되는 사적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어야 하고, 특정한 사익 또는 불이익이 권한의 활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함
표창원	2001	경찰관이 그 지위와 권한을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또는 편파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와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는 행위 및 이의 원인이 되거나 이에 조력하는 경찰관이 아닌 자의 행위
문성호	2002	경찰부패를 뇌물이라고 하는 것과 결부된 경찰의 일탈행위
신현기·김택	2004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법규를 남용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화의 가치를 획득하거나 수수하는 형태라 봄
이상수·표창원	2004	경찰관이 그 지위와 권한을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또는 편파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와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는 행위 및 이의 원인이 되거나 이에 조력하는 경찰관 아닌 자의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

이황우·남형수	2008	경찰관이 그 지위와 권한을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또는 편파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와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는 행위 및 이의 원인이 되거나 조력하는 경찰관 아닌 자의 행위
조호대	2009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는 특정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경찰력을 의도적으로 오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경찰권의 부적절한 행사를 하면서 돈이나 물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함
김광석	2010	경찰관이 업무 내·외적을 불문하고 직·간접적으로 탈·불법적인 각종 혜택 등을 받는 일련의 행위

<출처 : 신현기·김택, 2004: 214~216; 이황우·남형수, 2008: 75~77 재구성>

2) 경찰부패의 특성

경찰부패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분야의 부패에 크게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의 규제를 피해보려는 업주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다거나 경찰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부패한 정치인의 행태는 경찰부패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사실 경찰업무는 그 특성상 경찰이 부패 기회에 접하기 쉽고 도 부패 거래가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이황우·김진혁·임창호, 2007: 441-442).

이러한 경찰부패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경찰의 업무가 일반 시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각종 규제활동과 그 과정에서의 권력이 작용한다는 것보다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경찰이 대응하는 업무의 현실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불가피하게 일정부분 경찰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점과 관련이 있다(양문승·이동원, 2006: 315).

둘째, 경찰조직의 특성상 구성원들 간의 탄탄한 동료애를 바탕으로 하는 유대감과 계급적 구조 하에서 엄격한 상명하복 체제를 기본조건으로 하는 조직 문화적 특성으로 인하여 구성원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고발하는 도덕적 의무감과 문제의식이 무디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양문승·이동원, 2006: 315).

2. 경찰부패의 원인

경찰부패의 원인은 경찰관 개인적 성향이 경찰부패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과 경찰관 외부환경요인이 경찰부패의 원인이 발생된다는 원인론으로 나눌 수 있다.

1) 개인적 요인

경찰관 개인적 성향에 의한 원인으로는, 낮은 규범위식이나 윤리의식, 물질적 탐욕, 충동성과 같은 개인적 기질이 일탈행위를 야기하는 것으로 파악한다(홍태경·류준혁, 2011: 217).

일반적으로 자질이 부족한 자의 경찰채용이 대상이 된다.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부정직한 사람이 경찰조직에 와서도 부패경찰관이 된다는 것이다. 사과상자 안의 사과 중에 애초에 문제 있는 사과가 썩듯이 애초에 자질이 없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이 됨으로써 부패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개인의 윤리적 결함에서 부패의 원인을 찾는 것이다(이황우·김진혁·임창호, 2007: 442).

다시 말해, 경찰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채용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조직 내로 들어오게 되면 부패를 비롯한 각종 일탈행동의 주범이 되고 나아가 조직까지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이다(홍태경·류준혁, 2011: 217).

그 밖의 개인적 요인으로는 경찰관 개인인적인 차원에서의 경찰 청렴도 저해요인은 경찰관 개인의 윤리의식의 부재, 청렴도에 대한 인식부족, 개인적 탐욕에 의해 발생한다(이황우·남형수, 2008: 79).

그러나 부패에 대한 영향요인을 검증한 남형수(2009)와 이상열(2004)의 두 연구 모두에서 윤리의식이나 금전적 욕망과 같은 개인적 요인은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김용근(2006)의 연구 역시 개인적 청렴도 보다는 조직적 청렴도가 조직유효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경찰 일탈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다(홍태경·류준혁, 2011: 217).

2) 외부적 요인

경찰부패의 외부적 요인은 경찰이 경찰활동 중의 사회화과정을 통해 부패된다는 설명으로서 신입경찰은 기성경찰에 의해 이루어진 조직의 부패전통에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경찰부패는 개별 경찰관의 개별적인 부정이 아니라 조직에 결부되어 있는 모순적인 규범, 잘못된 관행과 문화 등 체계적 집단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경찰의 부패를 조장하고 묵인하는 구조적·체계적 환경 속에서 경찰공무원이 사회화되고 그로 인해 부패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이황우·김진혁·임창호, 2007: 442).

외부에 의한 경찰의 부패요인으로는 조직 특성적 요인과 환경 문화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조직 특성적 요인으로는 낮은 보수와 신분의 불안정, 과도한 단속 및 규제권한, 미흡한 부패통제 시스템, 경찰인사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저하 등이 해당된다. 조직 특성적 요인은 개인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의 중간적 단계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 문화적 요인으로는 경찰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의사전달체계와 경직

된 경찰조직 문화, 고객들의 부패유인 문제, 청탁압력, 인간관계 중심적 문화 등을 들 수 있다(이황우·남형수, 2008: 79).

환경 문화적 요인은 경찰문화·경찰제도·경찰의 조직윤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경찰문화의 경우 경찰만이 가지는 고유의 하위문화로 인해 새로운 경찰관이 입직하였을 때,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부정부패를 전염시킨다는 것이며, 경찰제도의 경우 경찰공무원의 보수 및 신분의 불안정이 결국 부패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의 조직윤리는 경찰공무원의 개인적 윤리와 동기와는 상관없이 충성심을 요구하여 부정부패조차도 충성심을 요구하는 경찰고유의 조직윤리 및 기타 부패에 호의적인 조직윤리로 인해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다(신현기·김택, 2004: 223).

3. 경찰징계

경찰부패에 대한 처벌은 경찰징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징계(discipline)는 조직구성원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인사행정 활동으로서 사후적 처벌이나 불이익처분으로 구성원의 그릇된 행동을 교정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사전에 잘못된 행동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O. Glann Stahl & Richrad A. Staufenberg 1974; O. W. Wilson & Roy C McLaren, 1977; 이황우, 2007: 341).

징계는 조직 구성원이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촉진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의 하나이며, 이것은 최후에 의존해야 할 활동이다. 따라서, 징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긍정적인 징계(positive discipline)로서 알려진 결함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부정적인 징계(negative discipline)로서 알려진 처벌 또는 응징의 형태는 가능한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사용되어야 한다(Nathan F. Iannone, 1987; 이황우, 2007: 341). 그리고 징계처분의 효과가 다른 인사활동의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징계의 필요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의 필요는 서로 상충되므로 양자의 문제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는 징계와 신분보장의 요청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을 법제화하여 징계의 남용을 막아 양자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이황우, 2007: 341).

경찰징계의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직권남용·수뢰·절도·위증 등과 같은 모든 형사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근무 중 위반행위, 명령불복종, 직무태만, 직장이탈, 기타 경찰관의 행동으로서 정당하지 못한 행위들이 크고 작은 징계처분의 사유가 된다(이황우, 2007: 342).

경찰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감봉·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파면과 해임은 경찰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며, 강등은 경찰의 계급을 강제적으로 낮추는 처분이며, 정직은 직무수행

을 정지시키는 처분이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의 경우 봉급을 감하는 처분이며,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개선케 하는 교정차원에서 행해지는 경찰징계이다.

<표 2> 경찰징계내용

징계	내 용
파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신분박탈 - 재직기간 5년 미만자 퇴직금 1/4 감액 지급 - 재직기간 5년 이상인자 퇴직금 1/2 감액지급 - 경찰공무원 재임용을 5년간 제한 - 교정목적이 아닌 조직보호 목적으로 행해짐
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신분박탈 - 원칙적으로 연금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 - 경찰공무원 재임용을 3년간 제한함 - 파면과 마찬가지로 조직보호 목적으로 행해짐
강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계급을 차하위 계급으로 강제로 낮추는 징계임 - 정직 3개월 처분 병과 - 처분기간 이후 18개월간 호봉승급을 제한함 - 처분기간 이후 18개월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 특별승진 임용 제한 - 처분기간중 보수의 2/3 감액 - 징계 말소제한 기간 7년
정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공무원으로 신분은 보장되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처분임 - 정직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임 - 처분 후 18개월간 호봉승급,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 특별승진임용이 제한 - 처분기간중 보수의 2/3 감액 - 징계 말소제한 기간 7년
감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임 - 처분 후 12개월 동안 호봉승급,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 특별승진 임용 제한 -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중지 - 징계말소 제한기간 5년
견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해당자를 회개하게 하여 추후 재발을 방지하고 잘하라는 교정차원의 처분 - 처분 후 6개월간 호봉승급,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 특별승진 임용 제한 - 징계말소 제한기간 3년

Ⅲ. 경찰의 부패분석

1. 연구방법 및 가설의 설정

경찰의 부패 원인과 처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의 부패현황과 처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10년 적발된 경찰 부패현황과 처분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분석되어진 자료는 징계대상자의 지역소속, 업무수행 부서, 계급, 비위 유형, 징계종류를 바탕으로 빈도분석과 아울러, 카이제곱을 통해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경찰의 자료가 명목적도이기 때문에, 명목적도를 통해 이들 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통계자료의 제한적 제공으로 인해, 빈도분석과 카이제곱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원인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역시 로우데이터(Raw Data)를 감안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부서 유형과 비위유형 간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가설 2. 부서 유형과 징계유형 간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가설 3. 비위 유형과 징계유형 간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 설정을 통해 경찰부패에 대해 부서유형, 비위유형, 징계유형 간의 관련성을 찾기 위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2. 경찰부패의 빈도분석

<표 3> 지방청별 징계대상자

		지방청		
		빈도	퍼센트	관서별 정원 비
유효	서울	281	34.4%	24.6%
	부산	58	7.1%	7.8%
	대구	46	5.6%	4.8%
	인천	35	4.3%	4.9%
	울산	29	3.5%	2.0%
	광주	12	1.5%	2.8%
	대전	7	0.9%	2.3%
	경기	162	19.8%	17.8%
	강원	17	2.1%	3.6%
	충북	16	2.0%	3.0%

	충남	37	4.5%	3.8%
	전북	30	3.7%	4.3%
	전남	27	3.3%	4.7%
	경북	30	3.7%	5.5%
	경남	22	2.7%	5.5%
	제주	9	1.1%	1.3%
	합계	818	100.0%	

연구대상자들이 근무하는 지방경찰청 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281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기지방경찰청으로 162명(19.8%)이었다. 부산지방경찰청이 세 번째로 많은 58명(7.1%)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는 경찰관서별 정원이 많을수록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관서별 정원비율과 징계대상자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물론 서울의 경우 정원비는 고작 24.6%를 차지하였으나, 징계대상자는 전체의 34.4%로 나타나 다른 지역의 징계대상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반면에 경북과 경남의 경우는 정원비율에 비해 낮은 징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부서별 징계대상자

		부서		
		빈도	퍼센트	부서별 정원 비
유효	경무	80	9.8%	3.8%
	생활안전	34	4.2%	5.7%
	수사형사	163	19.9%	18.3%
	경비교통	127	15.6%	20.6%
	정보보안	32	3.9%	5.4%
	지구대·파출소	380	46.5%	42.1%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2%	
합계		818	100.0%	

연구대상자들이 근무하는 부서들을 살펴보면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380명(46.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수사과 와 형사과로 163명(19.9%)이었다. 세 번째로는 경비교통과로 127명(15.5%)이었고 그 다음이 경무과 80명(9.8%), 생활안전과 34명(4.2%), 정보와 보안과 32명(3.9%)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서별 정원비와 징계대상자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지구대·파출소의 정원비가 전체 경찰 중 42.1%를 차지하였지만, 징계대상자 비율은 46.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으며, 기타 경비·교통의 경우는 부서별 정원비율은 20.6%였으나, 징계대상자 비율은 15.6%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징계대상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경무의 경우 정원비율은 고작 3.1%밖에 되지 않으나, 징계대상자가 9.8%에 해당하여 다른 부서보다 상대적으로 징계대상자가 높은 비율이라고 나타났다.

<표 5> 계급별 징계대상자

계급			
		빈도	퍼센트
유효	총경	6	.7
	경정	12	1.5
	경감	33	4.0
	경위	232	28.4
	경사	368	45.0
	경장	126	15.4
	순경	41	5.0
	합계	818	100.0

연구대상자들의 계급을 살펴보면 경사가 368명(45.0%)으로 가장 많았고 경위가 232명(28.4%)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세 번째는 경장으로 126명(15.4%)이었고 그 다음은 순경 41명(5.0%), 경감 33명(4.0%), 경정 12명(1.5%), 총경 6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비위유형별 징계대상자

비위유형			
		빈도	퍼센트
유효	금품수수	79	9.7
	부당처리	44	5.4
	직무태만	238	29.1
	품위손상	157	19.2
	규율위반	300	36.7
	합 계	818	100.0

연구대상자들이 저지른 비위유형을 살펴보면 규율위반이 300건(36.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직무태만으로 238건(29.1%)이었다. 품위손상이 세 번째로 157건(19.2%)이었고 그 다음은 금품수수 79건(9.7%), 부당처리 44건(5.4%)의 순이었다.

<표 7> 징계종류별 징계대상자

징계종류			
		빈도	퍼센트(%)
유효	파면	87	10.6
	해임	72	8.8
	정직	126	15.4
	감봉	166	20.3
	견책	367	44.9
	합계	818	100.0

연구대상자들이 받은 징계의 종류를 살펴보면 견책이 367건(44.9%)로 가장 많았고 감봉이 166건(20.3%)으로 두 번째였다. 세 번째는 정직으로 126건(15.4%)이었고 그 다음이 파면 87건(10.6%), 해임 72건(8.8%)의 순이었다.

3. 경찰부패의 적합도 검증

경찰부패의 적합도 검증은 카이제곱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비위유형과 징계종류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청 근무 징계대상자, 부서근무 징계대상자, 계급별 징계대상자에 대해서 각기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신뢰도가 떨어지는 비위유형과 지방청 근무 징계대상자 교차분석, 비위유형과 계급별 교차분석, 징계와 지방청 근무 징계대상자 교차분석, 징계와 계급별 교차분석은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 비위유형과 부서근무자 교차분석

		비위유형 * 부서 교차표							x ² /p
		부서							
		경무	생활안전	수사형사	경비교통	정보보안	지구대파출소		
비위유형	금품수수	빈도	15	9	21	5	3	26	52.391/ 0.000**
		기대빈도	7.7	3.3	15.8	12.3	3.1	36.8	
	부당처리	빈도	8	1	8	4	3	20	
		기대빈도	4.3	1.8	8.8	6.8	1.7	20.5	
	직무태만	빈도	14	9	47	50	6	112	
		기대빈도	23.3	9.9	47.5	37.0	9.3	110.8	
	품위손상	빈도	9	5	26	19	9	88	
		기대빈도	15.3	6.5	31.2	24.3	6.1	72.6	
	규율위반	빈도	34	10	61	49	11	134	
		기대빈도	29.3	12.5	59.7	46.5	11.7	139.2	
	전체	전체 %	9.8%	4.2%	20.0%	15.6%	3.9%	46.6%	

*p < .05, **p < .01

“부서 유형과 비위유형 간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부서 유형과 비위유형 간에는 분포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가설은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카이제곱 값은 52.391이고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은 5셀(16.7%)로 20%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안전’ 근무자의 비위유형인 ‘금품수수’와 ‘부당처리’, ‘정보보안’ 근무자의 비위유형인 ‘금품수수’와 ‘부당처리’를 제외하고는 내용간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징계종류와 부서근무자 교차분석

		징계종류 * 부서 교차표							x ² /p	
		부서								
		경무	생활 안전	수사 형사	경비 교통	정보 보안	지구대 파출소			
징 계 종 류	파 면	빈도	33	3	19	4	3	25	122.913/ 0.000**	
		기대 빈도	8.5	3.6	17.4	13.5	3.4	40.5		
	해 임	빈도	13	1	12	7	2	35		
		기대 빈도	6.9	2.9	14.0	10.9	2.7	32.6		
	정 직	빈도	12	9	15	20	5	65		
		기대 빈도	12.4	5.3	25.2	19.6	4.9	58.7		
	감 봉	빈도	10	6	38	33	6	73		
		기대 빈도	16.3	6.9	33.2	25.8	6.5	77.3		
	견 책	빈도	12	15	79	63	16	182		
		기대 빈도	36.0	15.3	73.3	57.1	14.4	170.9		
	전체	전체 %	9.8%	4.2%	20.0%	15.6%	3.9%	46.6%		

* p < .05, ** p < .01

“부서 유형과 징계유형 간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부서 유형과 징계유형 간에는 분포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가설은 채택되었다. 구체적

으로 카이제곱 값은 122.913이고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은 5셀(16.7%)로 20%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안전’ 근무자의 징계처벌은 ‘파면’과 ‘해임’, ‘정보보안’ 근무자의 징계처벌 ‘파면’과 ‘해임’을 제외하고는 내용간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징계종류와 비위유형 교차분석

		징계종류 * 비위유형 교차표					x ² /p	
		비위유형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		
징계종류	파면	빈도	37	9	6	11	24	225.225/ 0.000**
		기대빈도	8.4	4.7	25.3	16.7	31.9	
	해임	빈도	11	3	7	14	37	
		기대빈도	7.0	3.9	20.9	13.8	26.4	
	정직	빈도	13	5	34	30	44	
		기대빈도	12.2	6.8	36.7	24.2	46.2	
	감봉	빈도	5	10	27	54	70	
		기대빈도	16.0	8.9	48.3	31.9	60.9	
	견책	빈도	13	17	164	48	125	
		기대빈도	35.4	19.7	106.8	70.4	134.6	
	전체	전체 %	9.7%	5.4%	29.1%	19.2%	36.7%	

*p < .05, **p < .01

“비위 유형과 징계유형 간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비위 유형과 징계유형 간에는 분포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가설은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카이제곱 값은 225.225이고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은 2셀(8.0%)로 20%이하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부당처리’는 ‘파면’과 ‘해임’을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는 서로간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경찰부패의 대처방안

1. 법적차원의 통제전략

법적차원의 통제전략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을 비롯한 관련법으로 경찰부패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패와 관련된 법으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형법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으로서 2008년 2월 공포 시행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①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②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③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④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⑤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⑥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등 부패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부 고발자 보호조항을 두고 있으며, 신고자가 신변에 불안함을 느낄 경우에는 신변보호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신고내용과 관련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경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도 인정된다.

그 밖에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 행위로 인해 퇴직·파면·해임된 경우, 퇴직하기 전에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퇴직 후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결과를 살펴보면, 공직자가 부정행위로 구속되어 기소되는 기소율은 일반범죄의 60%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약 40%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국가청렴위원회, 2004; 최상일, 2006: 137), 또한 현재 형법상의 뇌물죄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행을 선고받은 사람은 드물고 대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처분을 받고 있다(김철수, 1996: 18)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 공무원 부패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부패에 의한 징계의 경우 보다 강력한 형태의 처벌과 함께 구상권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 정부윤리법, 감찰국법, 공무원복무 개혁법 등을 통해 경찰부패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처벌규정에 대해 각 주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둠으로 법률의 성격을 띤 양형에 대해서 매뉴얼화를 통해 지침을 제정하여 모든 연방판사를 기속하고 있어 경찰부패 및 기타 경찰범죄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지영환, 2010: 404).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달리 중한 뇌물죄의 경우에는 영향력 행사의 목적을 요하고 경한 뇌물죄의 경우는 영향력행사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족하다고 하여 유동적으로 처벌하고 있다(지영환, 2010: 390)

영국에서는 공공단체부패행위방지법, 부패방지법 등을 통해 공무원 부패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공공단체부패행위방지법 제2조를 통해 부패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비교적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영원히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강력히 규정하고 5년간 선거인의 등록 또는 의회나 공공단체의 업무에 종사할 구성원의 선거에 투표할 권리도 박탈하도록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지영환, 2010: 393).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형법 등을 통해 보다 강력한 처벌로 경찰공무원 부패에 대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경찰청에서는 경찰법을 개정해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반부패정책을 명문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2. 행정·제도적 차원의 통제전략

우리나라 경찰의 행정·제도적 차원의 부패 통제전략으로는 시민감사청구제도의 강화, 부정적 재량권의 방지, 인사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경찰부패를 대항하기 위한 전문적인 형태의 감사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에서의 경찰부패 기관으로는 경찰청과 지방청에 있는 감찰제도, 경찰서 단위의 청문감사관 제도, 인권보호센터, 2010년에 신설된 경찰감찰위원회가 전부이다. 이들은 경찰부패 및 비위에 대해 활동하고 있지만, 외국의 사례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영국을 비롯한 미국의 사례와 같이 전문적인 형태의 감찰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과 미국의 사례와 달리 외부감독에 의한 감시제도가 미약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을 대상으로 한 외부감독기관으로는 감사원이 전부이며, 이마저도, 경찰부패에 대한 감찰행위보다는 경찰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심사업무가 전부이며, 감찰인원 역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경찰 내부 통제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내부감찰 강화를 비롯하여 외부 감찰기관을 설립해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비단 경

찰부패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의 부패에 대해 전반적인 감찰활동을 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어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특별심사청(US Office of Special Counsel: OSC) 및 정부윤리청(US Office of Government Ethics), 특별검사제도 등을 통해 경찰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 부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적인 감찰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감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감찰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경찰청에서는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에 외부 반부패전문가, NGO 인사 등을 중심으로 ‘시민감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청 감사기능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지원담당실’을 신설하여 제식구 감싸기식 감찰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표 11> 미국, 영국, 한국의 경찰부패방지제도 비교

	내부감찰	민원조사 및 갈등해결	외부 감독
영국	경찰비리조사처	공공기소국, 경찰민원국	중대부패조사청, 감찰감찰청, 특별수사청
미국	각 주별 내부감찰국	경찰비리 심사 민간위원회, 경찰옹부즈만제도	특별심사청, 정부윤리청, 국무부, 특별검사제도
한국	경찰청/ 지방청 감찰, 경찰서 청문감사관, 경찰감찰위원회, 인권보호센터	청문감사관, 인권수호위원회, 시민인권보호단	감사원

3. 연구결과에 따른 대책방안

이 연구에서는 비위유형과 부서근무에 따른 관련성, 징계종류와 부서근무자간의 관련성, 징계종류와 비위유형에 따른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비위유형과 부서근무자간의 관련성 확인결과 각 부서근무자의 비위 유형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과 같이 객관적이지 못한 내용의 비위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형태의 비위유형에 대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자체적인 자정노력을 위해 지속적인 직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 본다.

두 번째 징계종류와 부서근무자간의 관련성의 경우 징계종류와 부서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구대 근무자의 상당수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지구대 근무자를 대상으로 특정행위와의 관계를 연구하여, 지구대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지구대의 경우 시민과의 접촉이 많은 원인으로 인해, 부패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구대 근무자 보호차원에서 지구대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세 번째, 징계종류와 비위유형과의 관련성 확인결과, 이 내용 역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과 같이 주관적인 판단기준을 가진 부패행위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가이드라인’을 설치함과 동시에 처벌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작성하여 적용시켜 부패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과 양형기준을 적용시켜야 하며, 지속적인 직장 내 업무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기관보다 부패에 민감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찰의 이미지는 부정부패의 아이콘이 될 만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 논의된 경찰의 부패는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찰관이 그 지위와 권한을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또는 편파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와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는 행위 및 이의 원인이 되거나 조력하는 경찰관 아닌 자의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경찰부패는 다른 국가기관의 부패와는 달리 개인적인 원인과 외부적인 원인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개인적인 경찰부패의 원인으로는 경찰의 자질부족, 경찰관 개인의 윤리의식의 부재, 청렴도에 대한 인식부족, 개인적 탐욕 등이 경찰부패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외부적인 원인으로는 경찰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의사전달체계와 경직된 경찰조직 문화, 고객들의 부패유인 문제, 청탁압력, 인간관계 중심적 문화 등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2010년 적발된 경찰 징계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징계종류와 비위유형, 징계종류와 부서근무자, 비위유형과 부서근무자가 관련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차원의 통제전략과, 행정·제도적 차원의 통제전략을 제안하였다. 법적차원의 통제전략의 경우 보다 강력한 형태의 법집행과 관련법을 개정하여 객관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행정·제도적 차원의 통제전략으로는 내부감찰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외부적 감찰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경찰부패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서, 기존연구와 달리 직접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가 실시되어 단순 빈도분석 위주의 통계자료와 달리 경찰의 징계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경찰의 징계 결과 결과만 나타난 명목변수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경찰부패의 원인을 살펴는데 모자람이 많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심도있는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김광석. (2010). 경찰청렴도 향상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유럽행정학회보」, 7(1): 119-148.
- 민형동·김연수. (2007). 경찰공무원 부패의 유형분석과 반부패전략. 「한국범죄심리연구」, 3(2): 81-118.
- 송병호. (2006). 경찰공무원의 부패와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3(1): 73-96.
- 신현기·김택. (2004). 국가경찰공무원의 부패원인과 방지에 관한 연구. 「한국유럽행정학회보」, 1(1): 212-234.
- 양문승·이동원. (2006). 경찰 반부패전략으로서의 감찰시스템 개선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 289-320.
- 이황우. (2007). 「경찰행정학」. 경기: 법문사.
- 남형수. (2008). 각국의 경찰부패통제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 15(1): 73-108.
 - 김진혁·임창호. (2007). 「경찰인사행정론」. 경기: 법문사.
- 조호대. (2009). 우리나라 경찰의 잠재청렴도 향상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7): 268-275.
- 지영환. (2010). 「공무원범죄학」. 서울: 형설.
- 최상일. (2006). 경찰부패 통제전략의 효과성제고에 관한 연구: AHP의 적용.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2): 129-152.
- 표창원. (2001). 외국의 경찰부패방지제도 고찰. 「한국경찰학회」, 3: 327-355.
- 홍태경·류준혁. (2011). 경찰일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8(1): 213-242.

투고일자 : 2012. 07. 03

수정일자 : 2012. 09. 11

게재일자 : 2012. 09. 21

국문초록

경찰의 부패실태와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김상운(대구가톨릭대)

우리나라 경찰역시 과거의 많은 시행착오로 인해 부정부패에 대한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며, 1980년대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부정부패가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

이러한 부정부패의 발생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개인적 입장에서 금전적 원인 및 개인가족 문제, 개인 윤리수준의 문제, 경찰로서의 자질문제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조직적 입장에서는 부정부패를 당연시 여기는 경찰조직의 부정부패를 인정하는 문화, 잘못된 상관에 의한 부정부패의 동조 등이 외부에 의한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적 원인과, 조직적 문화에 의한 원인이 골고루 분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2010년 적발된 우리나라의 경찰 부패 현황과 공식적인 자료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의 공식적 부패원인과 외부영향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에 바탕으로 현재 경찰의 부패예방 및 반부패 활동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주제어: 경찰부패, 경찰처벌, 비위유형, 경찰윤리, 부패방지안